

## 건축위원회 심의 주요결과

•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'○' 표시를 합니다.

운영기관	해운대구	심의일자	2023-08-17
건축종별	[ ] 신축, [ ] 증축, [ ] 대수선, [x] 기타		
건축주	성명(법인명) 유희경외 1 명	*여러 명인 경우 ○○○외 ○명으로 적습니다	
대지현황	대지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송정동		
	지번 206 - 7	관련지번 0	
	대지면적 344.1 m <sup>2</sup>	용도지역(지구,지역)	가축사육제한구역,방화지구,가로구역별최고높이제한지역,일반상업지역
건축물현황	건축면적 274.785 m <sup>2</sup>	건폐율 79.86 %	층수 지하: 1 층/지상: 4 층
	주용도 숙박시설	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	건축물 동수 1 동
	최고높이 13.6 m	용적률 254.72 %	연면적 합계 1014.415 m <sup>2</sup>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 종합 )분야	<p>▣ 심의조건</p> <p>【구조】 No 1.~6. 노필성 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E.V 철골프레임 용접 절단 작업 시 용접 불꽃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제1장 p2, 55)</p> <p>2. 이동식 크레인 작업 시 고정장치(아웃리거)설치 철저히 하여 전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(제7장 p84~87)</p> <p>3. 안전점검표 필수 확인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(제6장 p56)</p> <p>4. 장비 운영 및 차량 진출입시 신호수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.(제11장 p111)</p> <p>5. 안전에 유의하여 계획대로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라며, 건설기계 장비들은 가능한 최신의 것들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.(제7장 p58, 72~75)</p> <p>6. 이동식크레인의 슬링 안전성 및 크레인 전도 검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(제7장 p59~70)</p> <p>【안전】 No 1.~3. 정철호 위원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</p> <p>1. p84 부건축물 영향이 없도록 분리방법 제시 요함.</p> <p>2. p109 산소절단기 사용시 화재예방 안전대책 제시 요함</p> <p>3. p109 스카이 및 크레인 작업시 추락 및 전도방지대책 제시 요함</p> <p>【환경】 최길용 위원(원안의결)</p> <p>○ 위 조건에 문제없이 준비를 잘 수행하며, 환경 및 안전에 각별하여 수행하기 바람.</p> <p>○ 향후 석면의 분석과정 및 해체(작업)시 비닐 등의 일부 밀폐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인한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적게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</p> <p>○ 소음의 측정장비 및 소음의 거름망 등의 정보(사진)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음</p> <p>○ (권장사항) 석면의 관리대장 및 점검리스트가 누락이 되며, 결과분석 장비 및 현미경 분석 등의 장비내역 및 포집된 세부계획의</p>

	구분	주요 심의결과
심의내용	( 종합 )분야	<p>조건에 부합되는 것으로 수료시 안전에 따른 기본 서류 검토 필요</p> <p>■ 일반사항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본 심의는 해체계획에 대한 검토 심의이며 관련 법령 적합여부는 해체허가 신청 시 별도 검토하여 적합하게 계획하고 신청되어야 합니다.</li> <li>2. 해체허가 신청도서는 해체 심의도서와 일치하고, 상기 조건사항을 반영하며,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3. 해체심의 시 부여받은 위원별 심의 의견(조건)은 해체허가 접수 전 관련 조치계획에 대해 해당 위원의 확인을 득한 후, 해체허가 시에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</li> <li>4. 주요 해체공법, 계획 상 변경이 발생할 경우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해당분야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</li> <li>5. 심의 후 후속행정절차(건축물해체허가, 감리자지정, 착공신고) 진행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.</li> </ol>
심의결과		<p>[ ] 원안 의결  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조건부 의결    [ ] 재검토 의결    [ ] 부결</p> <p>※ 작성기준(건축위원회 심의기준 9.3 관련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원안 의결 : 상정안건에 대하여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</li> <li>• 조건부 의결: 상정안건에 별도의 내용을 부가하거나 제외하는 등의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건축사가 반영하도록 하는 의결</li> <li>• 재검토 의결 : 상정안건을 다시 검토 보완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토록 의결</li> <li>• 부결 : 상정안건이 건축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하여 부결시키기로 의결 (단, 「건축위원회 심의기준」 2.3 가목에서 라목까지 사유에 해당하여야 함 )</li> </ul>